고성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03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9. 26. 김희태 의원 등 6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5. 10. 2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5. 10. 20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김희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**안 제1조 및 제2조**)

2) 군수의 책무(**안 제3조**)

3)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(**안 제4조**)

4) 수색 활동 지원 및 협력체계(**안 제5조 및 제6조**)

다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2)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3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48호

- 예고기간: 2025. 9. 26.(금) ~ 10. 1.(수)[5일간]
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○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조례안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1조~제3조) 목적, 용어 정의, 다른 조례와의 관계
- (안 제4조) 적극적인 수색 활동을 지원하는 군수의 책무
- (안 제5조~제6조) 지원범위와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, 제6호 및 같은 법 제28조(조례),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34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음.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10. 20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